

【 9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0. 3. 11.

제출자 : 양주군수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경기도세정 13400-350)에 따라 양주군 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운용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안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안 제2조)
- 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되 신청제로 변경함. (안제4조)
- 다.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면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에 따라 관계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9조)

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전세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11조)

마.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전에는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주차 전용 토지에 부과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면제 하였으나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안 제14조, 제15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9조증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하고, 동조증 “5세대”를 “2세대”로,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조명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증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②국가유공자등에 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등록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그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신설삽입>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p>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후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u></p> <p>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의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p>	<p>③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u></p> <p><u>동법 제28조의5-----</u></p> <p><u><삭 제></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의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삭 제〉</p> <p>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p>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악
<p>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p> <p>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p>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제20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p> <p>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p> <p>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영조례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p> <p>-----</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u> 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p><u>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u> 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小官部處 : 산업자원부

制定	1990 · 1 · 13	法律第4212號
改正	1991 · 5 · 31	法律第4381號(建築法)
	1991 · 12 · 14	法律第4419號(消防法)
	1991 · 12 · 14	法律第4429號(水道法)
	1993 · 3 · 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3 · 8 · 5	法律第4574號(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1994 · 1 · 7	法律第4720號
	1994 · 12 · 22	法律第4825號(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관한法律)
	1995 · 1 · 5	法律第4919號(建築法)
	1995 · 8 · 4	法律第4970號(廢棄物管理法)
	1995 · 12 · 29	法律第5091號
	1995 · 12 · 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社法)
	1996 · 12 · 31	法律第5240號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 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8 · 1 · 13	法律第5499號(銀行法)
	1998 · 5 · 25	法律第5544號(外國人土地法)
	1999 · 2 · 8	法律第5827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工業의 合理的 配置를 誘導하고 工場의 원활한 設立을 지원하며 工業立地 및 產業園地의 體系的 管理를 實現함으로써 지속적인 工業發展 및 균형있는 地域發展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 · 12 · 29 法509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4 · 1 · 7, 95 · 12 · 29 法5091, 96 · 12 · 31, 99 · 2 · 8>

1. “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하는 機械·裝置 등 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過密抑制地域”이라 함은 產業의 密集度와 人口增加率이 현저히 높아 工場의 移轉促進 및 新設 또는 増設의 제한이 필요한 大都市와 그 周邊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3. “成長管理地域”이라 함은 產業의 密集度와 人口增加率을 計劃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허용이 필요한 地域으

(총 108)

(全文改正 96·12·31)

第4章의2 아파트型工場

第28條의2 (아파트型工場의 設立등) ①第13條·第13條의2·第13條의3·第13條의4·第13條의5·第14條·第14條의2·第14條의3·第14條의4 및 第18條의規定은 아파트型工場의 設立承認、認·許可등의 機制、設立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처리 기준의 告示等、設立등의 承認取消、建築許可、사용승인、製造施設設置承認、製造施設設置承認의 取消 및 協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建築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에게 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型工場臺帳에 登錄하여야 한다.

④管理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의 登錄을 한 때에는 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第28條의3 (아파트型工場에 대한 지원) ①아파트型工場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하여 分讓 또는 貸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產法 및 地方財政法에 불구하고 建設原價로 分讓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貸貸料로 貸貸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原價로 分讓을 받은 者는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賣却할 수 없다. 다만, 破產으로 인한 賣却등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99·2·8)

第28條의4 (아파트型工場의 分讓) ①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 貸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工場建築物 着工事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募集公告案을 작성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 公開로 入住者(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 貸貸받아 製造業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產業資源部令

(총 108)

第28編 商業・貿易・工業 第5章 工業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 貸貸하는 경우에는 第 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公共事業에 의하여 撤去되는 工場의 誘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設立된 아파트型工場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型工場

③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 第45條의3의 規定에 의한 韓國產業園地公團,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이하 “地方公社”라 한다)인 경우에는 第 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募集公告案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한 후 入住者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本條新設 99·2·8)

第28條의5 (아파트型工場에의 入住) ① 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할 수 있는 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1. 製造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2.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 第 2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3. 기타 入住業體의 生產活動을 지원하기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 第 1 項第 1 號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할 수 있는 施設의 범위 및 규모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8)

第28條의6 (아파트型工場의 관리) ① 아파트型工場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이를 관리한다.

1.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法律에 의한 區分所有關係가 成立하는 경우 : 同法 第23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團
2.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法律에 의한 區分所有關係가 成立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

② 第 1 項第 1 號의 規定에 의한 管理團은 管理團이 구성된 때부터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法律 第28條第 1 項의 規定에 의

(추 108)

● 貸貸住宅法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全文改正 1993. 12. 27 法律第4629號
 改正 1995. 12. 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社法)
 1996. 12. 30 法律第5228號
 1997. 12.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第1條 (目的) 이 법은 貸貸住宅의 建設·供給 및 관리와 住宅貸貸事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貸貸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고 國民住居生活의 안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號와 같다. <改正 96. 12. 30>

1. “貸貸住宅”이라 함은 貸貸目的에 제공되는 建設貸貸住宅 및 買入貸貸住宅을 말한다.
2. “建設貸貸住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住宅을 말하며, 그 종류는 太統領令으로 정한다.
 - 가. 貸貸事業者가 貸貸를 目的으로 建設하여 貸貸하는 住宅
 - 나.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事業者가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建設한 住宅중 使用検査시까지 分讓되지 아니한 住宅으로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貸貸事業者登錄을 마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貸貸하는 住宅
3. “買入貸貸住宅”이라 함은 貸貸事業者가 賣買등에 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하여 貸貸하는 住宅을 말한다.
4. “貸貸事業者”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나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事業을 目的으로 설립된 地方公社(이하 “地方公社”라 한다)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貸貸事業을 하기 위하여 登錄한 者를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貸貸住宅의 建設·供給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住宅建設促進法 및 住宅貸貸借保護法을 적용한다.

第4條 (貸貸住宅의 優先建設) ①建設交通部長官은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의 規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2章 住宅 貸貸住宅法

③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貸貸事業者的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도 抹消당시 이미 체결된 貸貸借契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貸貸事業者 및 貸借人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한다.

第12條 (賃貸住宅의 賣却制限) 賃貸住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하 “**賃貸義務期間**”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賣却할 수 없다. 다만, 貸貸事業者간의 賣買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條 (賃貸住宅의 轉貸制限) 賃貸住宅의 貸借人은 貸借權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賣買·贈與 기타 權利變動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賃貸住宅을 다른 사람에게 轉貸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貸貸事業者の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 (建設賃貸住宅의 賃貸條件等) 建設賃貸住宅의 貸借人の 資格·선정방법·賃貸保證金·賃貸料등 賃貸條件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建設賃貸住宅의 無住宅世帶主에의 優先賣却) 貸貸事業者は 貸貸義務期間이 경과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賃貸住宅을 賣却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無住宅世帶主에게 우선하여 賣却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16條 (賃貸條件의 申告) ①貸貸事業者が 賃貸住宅을 賃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貸貸借契約期間·賃貸保證金·賃貸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條件에 관한 사항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申告內容이 인근의 유사한 賃貸住宅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规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賃貸住宅의 관리) ①貸貸事業者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賃貸住宅에 대하여는 住宅建設促進法 第39條의 规定에 의한 住宅管理業者에게 그 관리를 委託하거나 이를 自體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추 79)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2章 住宅 임대주택법시행령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한 자가 그 택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택지를 매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택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임대사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2.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③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4·1)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11·13>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등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추 102)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2章 住宅 임대주택법시행령

②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8·11·1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97·4·1〉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98·11·13〉

⑤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8·11·13〉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98·11·13〉

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8·11·13〉

1.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租稅特例制限法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국세청)

全文改正 1998·12·28	法律第5584號
개정 1999·3·31	법률 제5960호(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9·4·30	法律第5980號
1999·5·24	法律第5982號(政府組織法)
1999·8·31	法律第5996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租稅의 減免 또는 重課등 租稅特例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課稅의 公平을 기하고 租稅政策을 效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內國人”이라 함은 所得稅法에 의한 居住者 및 法人稅法에 의한 内國法人을 말한다.
2. “課稅年度”라 함은 所得稅法에 의한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法에 의한 事業年度를 말한다.
3. “課稅標準申告”라 함은 所得稅法 第70條 내지 第72條·第74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 및 法人稅法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의 申告를 말한다.
4. “盈金”이라 함은 所得稅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總收入金額 또는 法人稅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盈金을 말한다.
5. “損金”이라 함은 所得稅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 또는 法人稅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損金을 말한다.
6. “移越課稅”라 함은 現物出資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法人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事業用固定資產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產등”이라 한다)을 다른 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이를 讓渡하는 개인 또는 法人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法人稅法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를 課稅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讓受한 法人이 당해 事業用固定資產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產등”이라 한다)을 讓渡하는 경우 從前事業用固定資產등의 取得價額을 新事業用固定資產등의 取得價額으로 보아 新事

(주 112)

第5章 外國人投資등에 대한 租稅特例

第121條의2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등의 減免)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를 각각 減免한다.

1.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繫要한 產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
2. 外國人投資促進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年度(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③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投資家(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章에서 “株式 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각 課稅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그 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의 比率에 따라 減免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稅額의 全額을,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第20編 内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④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產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각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公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取得稅·登錄稅 및 財產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產에 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동안은 당해 財產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⑤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1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취득·보유하는 財產이 있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產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각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公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財產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는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2. 財產稅는 당해 財產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產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第20編 内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 ⑥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終了日(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는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減免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租稅減免內容 變更決定이 있는 경우 그 變更決定의 내용은 당초 減免期間의 殘餘期間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⑦外國人(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 · 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對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 ⑧財政經濟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받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그 減免 · 減免內容變更 · 減免對象 해당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 · 登錄稅 ·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場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⑨外國人投資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5·24)

第121條의3 (關稅등의 免除) ①第121條의2第1項 各號의 事業에 소요되는 다음各號의 資本財(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에 따라 導入되는 경우에는 關稅 · 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值稅를 免除한다.

1. 外國人投資企業이 外國投資家로부터 出資받은 對外支給手段 또는 内國支給手段으로 導入하는 資本財

(추 108)

第20編 内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2. 外國投資家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7號에 해당하는 出資目的物
(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導入하는 資本財

②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值稅를 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外國人投資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5·24]

第121條의4 (增資의 租稅減免) ①外國人投資企業이 增資하는 경우에 당해 增資分에 대한 租稅減免에 대하여는 第121條의2 및 第1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租稅減免申請에 대하여는 第121條의2第8項의 規定에 의한 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를 생략할 수 있다.

②外國人投資促進法 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再評價積立金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外國投資家가 취득한 株式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株式등에 대한 減免의 例에 따라 그 減免期間의 殘餘期間과 그 殘餘期間의 減免比率에 따라 減免한다.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事業開始日은 資本增加에 관한 變更登記를 한 날로 한다.

[本條新設 99·5·24]

第121條의5 (租稅의 追徵) ①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21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法人稅 또는 所得稅를 追徵한다.

1.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경우
2. 第121條의2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基準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申告한 内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

(추 108)

•第20編 内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國法人에게 譲渡하는 경우

5.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②稅關長 또는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된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值稅를 追徵한다.

1.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경우

2. 出資目的物이 申告된 目的의 目的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譲渡하는 경우

4.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廢業하는 경우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21條의2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이 경우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比率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稅額을 追徵한다.

1. 第121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가 減免된 후 外國投資家의 株式등의 比率이 減免당시의 株式등의 比率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第121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가 減免된 후 外國投資家가 이 法에 의하여 所有하는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譲渡하는 경우

3.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경우

4.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이 廉業하는 경우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追徵할 稅額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된 稅額을 追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外國人投資企業이 合併으로 인하여 解散됨으로써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이 抹消된 경우

2. 第12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등을 免除받고 導入되어 사용중인 資本財를

(추 108)

第20編 内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減價償却, 技術의 進步 기타 經濟與件의 变동등으로 그 본래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目的의 目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證券去來法에 따라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을 공개하기 위하여 株式등을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讓渡하는 경우

4. 第1號 내지 第3號의에 租稅減免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本條新設 99·5·24)

第121條의6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免除) ①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긴요한 高度의 技術을 導入하는 契約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契約을 체결한 경우 당해 契約의 내용에 따라 技術을 제공하는 者가 받는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契約에서 최초로 그 代價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年동안 이를 免除한다.

②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를 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5·24)

第121條의7 (權限의 委任등)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章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國稅廳長, 關稅廳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投資關聯機關의 長에게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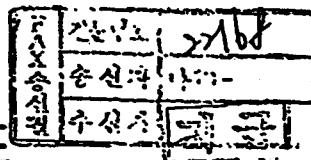
(本條新設 99·5·24)

第6章 기타 租稅特例

第1節 課稅標準 陽性化를 위한 租稅特例

第122條 (收入金額의 증가등에 대한 稅額控除) ①不動產貨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居住者(이하 이 條 및 第123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시 申告한 事業場別 總收入金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收入金額의 100分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場의 事業所得등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

(추 108)

경기道
취급 정보통신망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 휴 (033)249 - 2311 / FAX (033)249 - 2319
세정과 과장 최원택 사무관 이해성 담당자 김지영

<http://www.provin.kyonagi.kr>

문서번호 세정13400-350

시행일자 99. 12. 16 (30년)

(경유)

받음 수신처 참조

참조

선행	5/13	2000	지시	
접수	일자 시간	1999. 12. 16	결재	2000. 12. 16
	번호	4198	제	
처리 과			공	
담당자			합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계획 및 개정(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13400-1232('99. 12. 8)호 및 세제 13400-1240('99. 12. 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감면조례 경비계획 및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등 보하니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 바라며
3. 아울러 도세감면조례 자구수정 조문을 별첨과 같이 승부하니 시군세 해당 조문의 경우에도 자구수정을 하여 개정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방세 감면조례 경비 계획 1부.
2.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3. 도세 자구수정조문 1부. 끝.

경기도 지



받는곳 : 각[세정(세무·부과·시세·재무)과장]

地方稅 減免條例 整備(改正) 計劃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I. 條例 改正의 必要性

-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
 -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
- 불필요한 감면 축소
 -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
- 자치단체 요구 및 민원 해소
 - 감면조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종합적으로 검토
- 규정의 명확성 제고
 -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

II. 推進 過程

- 총22건의 검토과제를 선정하여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정(3차)을 거쳐
 - 개정시안을 마련함

- 각 시·도 감면조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
 - 4건 : 폐지
 - 7건 : 제정 및 개정
 - 7건 : 현행존치
 - 4건 : 별도검토키로 함

〈非課稅·減免 現況〉

- | <p><u>○ 비과세·감면 총규모('98) : 2조203억원(징수총액의 11.7%)</u></p>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 : 1조 2,096억원(59.8%) - 조례상 감면 : 7298억원(36.1%) - 조세특례제한법등 감면 : 809억원(4.1%) | | | | | | | | | |
| <p><u>○ 전년대비 감면규모 증가율 : 12%</u></p> | | | | | | |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연도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u>'97</u></th> <th style="text-align: center;"><u>'98</u></th> </tr> </thead> <tbody> <tr> <td>• 감면규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39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03억원</td> </tr> <tr> <td>• 전년대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16.3%)</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body> </table> | • 연도별 | <u>'97</u> | <u>'98</u> | • 감면규모 | 18,039억원 | 20,203억원 | • 전년대비 | (△16.3%) | (△12%) |
| • 연도별 | <u>'97</u> | <u>'98</u> | | | | | | | |
| • 감면규모 | 18,039억원 | 20,203억원 | | | | | | | |
| • 전년대비 | (△16.3%) | (△12%) | | | | | | | |

III. 事案別 檢討 內容



1.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과세전환

- 도시가스업자의 초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였으나
⇒ 흑자로 전환되어 더 이상 감면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과세 전환

* 다만, 자치단체별로 도시가스사업의 착수시기가 다르므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과세전환시기를 조정토록 함

2. 주차장에 대한 감면 : 과세전환

-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등을 면제하였으나
⇒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전환

* 다만,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과세전환시기·대상 및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간 사업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 시한만료

- 감면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폐지(기통보)

4.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 시한만료

- 감면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폐지(기통보)

◎ 중고차 판매 특례

1.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신설

-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는 판매목적으로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것이며
- 현재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감면 요구 수용

2. 성업공사, 구조조정전문회사가가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 인수시 감면 규정 : 신설

- 성업공사나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 경영을 정상화시켜 매각하기 위한 일시적인 소유라고 볼 수 있으며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입시 세금부담이 많아 인수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 ⇒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시한 2000년말) 감면규정 신설

*기업구조조정이 은행을 통한 5대그룹의 빅딜위주에서 시장을 통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작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간 사업양수도에 대한 감면 및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등은 폐지하는 대신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키로 함

1.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종토세를 전액 면제함

*현행 : 재산세 0.15%과세. 종토세 50% 경감 ⇒ 개정 : 현재 전통건조물보존법(99.1.21.)의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 삭제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

*현행 : 국가유공자 개인 ⇒ 개정 :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

3.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개선

-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입법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감면조례로 보완

*현행 : 공장설립승인 이후 취득한 토지만 감면 ⇒ 개정 : 공장설립 목적으로 승인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도 포함

4.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소세 면제범위 및 LPG연료 사용범위 등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음

-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

-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틈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

*현행 :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개정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

5. 장애인이 감면대상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어

- 자치단체에서 그 해석·운용에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민원 해소

*현행: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 ⇒ 개정:최초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

1. 부동산 취득후 사용유예기간 연장(1년→3년) : 수용 불가

- 지방세법 제107조에서도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사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준비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용불가

2.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감면규정중 “녹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한정시킴 : 수용 불가

-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중 “녹지”는 도시공원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충녹지, 경관녹지를 의미하는 것임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은 당초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보존녹지지역으로 한정시킬 이유가 없음

3. 의료사업목적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개선 : 수용불가

- 감면조례에서 의료목적사업 지방공사만 제외할 경우 타 공사와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 모든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50%면제로 개정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적자인 관계로 해당공사 및 자치단체의 반발 예상

*내년도 지방세법 감면규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4.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에 대한 과세전환 : 수용불가

- 지방세법에서 의료법인,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 감면조례에서 지방공사 병원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만 과세 전환하는 것은 불협화문 문제 발생

※ 내년도 지방세법 감면규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5. 장애인 화물자동차 적재정량(1톤) 확대 : 수용 불가

- 신체장애에 따른 보행불편 해소 및 생업활동용으로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수용불가

6.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감면받은 자가 별장등으로 사용할 경우 추징규정 마련 : 수용 불가

-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거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는 등 감면요건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별도의 추징규정 불필요

7. 국가유공자 수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 개선 : 개정 불필요

- 현행 규정에 의한 해석으로도 유공자 수에 따른 감면 가능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 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트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을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 조"를 "동법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각 삭제한다.

제10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를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로 하고, 단서중 "외국 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로 하며,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로 하고,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누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OO도 OO시 · 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①</u> <u>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u> <u>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u>② 국가유공자동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청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처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u></p>	<p><u>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u></p> <p><u>②</u></p> <p><u>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혼자·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u></p> <p><u>감면신청하는</u></p> <p><u>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호인·</u></p>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단서 신설>

해외이민·유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 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 세를 추징한다.

제4조-----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면신청하는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

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유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
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
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
를 추징한다.

1~4. (생략)

② (생략)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
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
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
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
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파
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략)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
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
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3. (현행과 같음)

<삭 제>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 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p> <p>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 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 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 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 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 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 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 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 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 동주택용 부동산을 <u>임대주택법</u>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 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 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 징한다.</p> <p>1·2·3 (생략)</p>	<p>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 면)-----</p> <p>-----</p> <p><u>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u></p> <p>-----</p> <p>1·2·3 (현행과 같음)</p>
--	--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②(생략) ③ <u>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u>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u>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계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u>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②(현행과 같음) ③ <u>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u>제28조의 2의</u> <u>동법 제28조의 5의</u>
---	---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삭 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
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
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
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
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자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
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
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
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
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
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점당한 사유없이 주차
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
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
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짐
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
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
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
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
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1
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
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
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삭 제>

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 수입
금액×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
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
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
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
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
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
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
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
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
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0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
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항 및 동조 제5
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
항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
항에-----

시·도세감면조례중 자구수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락)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양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생 락)</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제○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p> <p>1. <u>등록을 한 차</u></p> <p>2. (현행과 같음)</p> <p>3. <u>등록을 한</u></p>	조문개정
<p>제○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 락)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양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생 락)</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제○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 락) ②</p> <p>1. <u>등록을 한 차</u></p> <p>2. (현행과 같음)</p> <p>3. <u>등록을 한</u></p>	조문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임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제○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p> <p>-----</p> <p>-----</p> <p>-----</p> <p>-----</p> <p>-----</p> <p>-----</p> <p>-----</p>	법령명칭 변경
<p>제○조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등별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 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조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등별시행령제3조</p> <p>-----</p> <p>-----</p> <p>-----</p> <p>-----</p> <p>-----</p> <p>-----</p>	법령명칭 변경 및 조문개정
<p>제○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의 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 세법시행령제84조의4</p>	<p>제○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 <p>-----</p> <p>-----</p> <p>-----</p> <p>-----</p> <p>-----</p>	조문 개정 <small>제거시 불필요</s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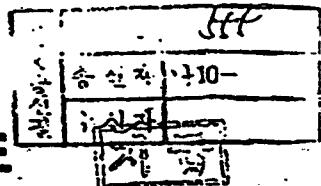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1. ~ 3. (생 탁)</p> <p>② 폐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그 부대시설은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 승인서</u>로부터 5년간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p> <p>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이외의 용도(일부분 주차장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p> <p>-----</p>	조문 개정
<p>제○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업은 말한다)의 <u>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u>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자동차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제○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p> <p>-----</p>	조문 개정

현 행	개 경 안	개정사유
<p>제○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한 간면)</p> <p>① (생 략)</p> <p>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 정을 받은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 <u>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u> <u>공지된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u> <u>품 생산을 위한 사업체필승인을 얻은</u> 자</p> <p>2. 3. (생 략)</p>	<p>제○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한 간면)</p> <p>① (현행과 같음)</p> <p>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2. 3.(현행과 같음)</p>	<p>법령 등 청 변경 및 조문개정</p> <p><u>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u></p>

※ 시군구세 관련조문에 대하여 시군구에 전파요망

"21세기 도전·창조·희망의 경기"

경 도 기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0331) 249-2311 / FAX(0331)249-2319
세정과 / 과장 최원택 / 사무관 이해성 / 담당자 김지영



문서번호 세정 13400 - 35

시행일자 2000. 1. 12 (년)

공개여부 (공개)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세정(세무, 재무회계)과장

선임	6	3	지 시	
전 수	일자 시간	2000. 1. 12.	결 재	2000. 1. 12.
체 리 과	번호	353	· 공 랑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수정사항 통보

1. 행자부 세제 13400-14(2000. 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중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당초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목적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시·군세 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안을 별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별임 : 시(군)세 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



경 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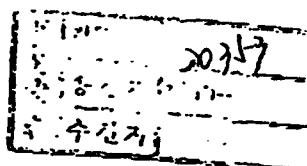
전결 세정과장 최원택

받는곳 : 북부출장소. ④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당초 개정조례(안)	수 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 컴퓨터 2000년문제 우리는 안전한가



경기도

체급 정보통신망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01 1/F (033)249 - 2311 /FAX (033)249 - 2319
세정과 과장 최원택 사무관 이해성 담당자 김지영

<http://www.provin.kyonggi.kr>

문서번호 세정13400-10179

시행일자 1999. 11. 15 (30년)

공개여부 (공개)

발 을 수신처 참조

참 조

선감	10월 3일	지시	
접 수	일자 1999. 11. 15.	결 재	↓
	시간		2000. 1. 14
	번호		2000. 1. 14
처리 과		· 공 · 랑	
당 담 자			
심사자		심사 일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 13410 - 1018('99. 11. 6)호와 관련입니다.

2.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원활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안)을
들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것
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 자료로 한용코자 하오니 첨첨 자료
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99. 11. 17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시군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경기도 지

전경 세정과장



받는곳 리 【세정(세무·재무·부과·시세)과감】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임대주택에대한 감면) 본문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부 척

D(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통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	제0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3.(생략)	(단서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도세감면조례관련 참고자료 서식

1. 임대주택 감면현황

o 1-1 건설임대사업자

년도별	합계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전수세액	전수세액	전수세액	전수세액
1998												
'99.10												

o 1-2 매입임대사업자

년도별	합계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전수세액	전수세액	전수세액	전수세액
1998												
'99.10												

2. 2세대이상 5세대미만 임대주택 부과징수현황

년도별	합계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전수세액	전수세액	전수세액	전수세액
1998												
'99.10												

3. 2세대이상 5세대미만 임대주택 부과징수 예상액

년도별	합계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전수세액	전수세액	전수세액	전수세액
2000												

*1.2.3 공히 면제대상만 기재(60㎡초과 공동주택은 제외)

• 1399 신고하여 고향식품 뿌리풀자.
• 컴퓨터 2000년문제 우리는 안전한가

취급 경보동신명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 ☎ (0331)249 - 2311 / FAX (0331)249 - 2319

세정과 과장 최원역 사무관 이해성 담당자 김지영

<http://www.provin.kyonogi.kr>

문서번호 세정13400-10302

시행일자 2000.02.29 (5년)

공개여부 (공개)

받음 수신처 참조

참조

F	전문번호	24P
A	승신자	410-
X	수신자	

전량	673m ³	기	
접수	인자 시간	2000. 3. 9 2.	결재
	번호	2044	
			· 공
			· 랑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따른 시·군세감면조례 개정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제 13400 - 210(2000. 2. 25)호와 관련입니다.
- 현재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50%경감하고 있는바
-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변경되고 조합의 영철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시·군세감면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 개정안을 참고하여 감면조례를 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제100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적격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계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0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 ··· 경기 신용보증재단 ··· ··· ··· ··· ···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 ··· ··· ··· ··· ···

끔.

경기도지
전경 세정과장

최원역



수신처 : [세정(세무·부과·시세·재무)과장], 빠,

· 희망의 새천년- 새롭게! 더 힘차게! ·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이 능 3

군 보

제 166 호
1999년 12월 13일 (월)

차 래

자치법규입법예고

-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 1999-433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3

고 시

- | | |
|----------------------|--------------------------|
| ○ 양주군 고시 제 1999-114호 | 하천 점용허가(공작물 신축)에 관한 고시 4 |
| ○ 양주군 고시 제 1999-115호 | 유, 주수인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4 |
| ○ 양주군 고시 제 1999-116호 | 하천 점용허가(공작물 신축)에 관한 고시 5 |
| ○ 양주군 고시 제 1999-118호 | 노후된 수리시설 개보수고시 5 |

회	12월 13일	12월 16일					
람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66 호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1999-433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 주 군 수
1999년 12월 13일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 "안"
2. 개정이유 :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호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하려고 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안" 제 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화 820-2182, 218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기재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9 3 3

군 보

제 173 호
2000년 1월 24일 (월)

차 래



- 양주군 공고 제17호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3
- 양주군 공고 제18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4



- 양주군 고시 제2000- 5호 유수사용허가 사항고시 5



- 양주군 공고 제2000- 15호 국토이용계획 예고 및 개발계획수립(안) 6
정경공고
- 양주군 공고 제2000- 19호 2000년 재정운영 상황 공개 7

회 람									
--------	--	--	--	--	--	--	--	--	--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73 호

양주군공고 제 18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 주 군 수
2000년 1월 24일

자치법규입법예고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경기도 세청 13400-350)에 따라 양주군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계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로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함 (안 제2조)
- 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를 면제하던 것을 직계 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함 (안 제4조)
- 다.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종로세를 전액 면제함(안 제9조)
- 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도심으로 차량유입을 증가시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한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과세전환 (안 제14조,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창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화 820-2182, 218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양주군군세감면조례

[1997. 12. 31]
[조례 제1660호]

개정 1998. 4. 30 조례 제1672호

개정 1998. 10. 14 조례 제1679호

개정 1999. 5. 10 조례 제1705호

개정 1999. 6. 14 조례 제1712호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동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추 3)

제6편 계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감면조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 3 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4 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추 3)

제6편 제무 제1장 세무 양누군군세감면조례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 4 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괴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괴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

제6편 제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감면조례

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신설 '99. 5. 10)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추 3)

제6편 계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감면조례

제11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편 계무 제 1 세무·양주군군세감면조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동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 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추 3)

제6편 재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 감면조례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빙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범인장 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6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추 3)

제6편 재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감면조례

제20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의2(산업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추 3)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경기도세정13400-350)에 따라 양주군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운용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안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2조)
- 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되 신청제로 변경함(안 제4조)
- 다.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손실보상 차원에서 종전에는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면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에 따라 관계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9조)
- 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11조)
- 마.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전에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부과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였으나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안 제14조, 제15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관련)

□ 관계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2000. 1.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

- 개정준칙(안)
- 현행 조례중 관련조항

• 21세기 도전, 창조, 혁명의 경기 •

경 기 도

취급 정보통신망

문제번호	2000-10635
속신자	10-
신자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 (033)249 - 2311 /FAX (033)249 - 2319
 세정과 과장 최원택 사무관 이해성 담당자 김지영

<http://www.provin.kyonggi.kr>

문서번호 세정13400-10635

시행일자 2000.04.10 (5년)

공개여부 (공개)

발 응 수신처 창조

참 조

선탐	2000. 4. 10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0. 4. 10 10:00	결 재
	번호	3670	
	처리 과		· 공 람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증개경조례(안) 수정 통보

1. 세정 13400 - 10535(2000. 3. 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기 통보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시·군세감면조례증 개경조례(안)중 부칙조항을 수정하여 붐영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시·군세 감면조례증개경조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전경 세정과장

최원택



받는곳 : 미, 베[세정(세무·부과·도내·재무)과장]

1-1

"희망의 새천년 - 새롭게! 더 힘차게!"

○○도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도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